## 艦 한 국 물 리 학 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601호 ® 02-556-4737(대) FAX 02-554-1643

물리학회선관위2024-01호 문서번호 선결 지 시 시행일자 2024. 3. 27. 일자 접 시간 (경 유) 결 수 버호 재 수 신 회 원 처 리 과 참 조 공 람 담 당 자

제 목 제31대 한국물리학회 회장 선거

- 1. 본 학회 제31대 회장 선거에 관한 건입니다.
- 2. 본 학회의 '회장선출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제31대 회장 선거를 첨부한 일정과 같이 실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한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선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자 명단은 오는 4월 17일에 발표되며, 선거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마감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증빙자료 첨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 명단 발표일
 평의원 선거권 이의신청 마감일
 2024년 4월 17일
 정회원 선거권 이의신청 마감일
 2024년 6월 30일

3. 회장선출 규정 제2조에 따라 제31대 회장 선거의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첨부 1. 제31대 회장선거 안내1부첨부 2. 회장 선거 일정1부첨부 3. 회장선출 규정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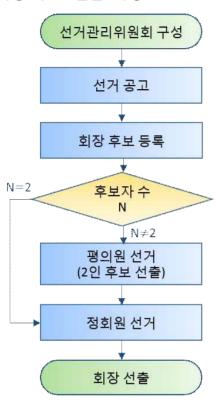
- 끝 -

제31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철 의



### 첨부1. 제31대 회장선거 안내

#### 1. 회장 후보 선출 과정



-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거 공고를 합니다.
- 평의원 추천을 통해 회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 2인 후보자 구도로 조정합니다.
- 등록된 회장 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이 거나 2인 미만인 경우, 평의원 선거를 먼저 실시하여 2인 후보를 선출합니다.
- 정회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 회장을 선출합니다.

#### 2. 회장 후보 등록 및 평의원 추천

- 회장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office@kps.or.kr)을 통해 접수합니다. 우편/방문 접수는 <mark>5월 7일(화) 오후6시까지 학회에 도착/방문</mark>에 한하고, 이메일 접수 마감은 **5월 7일(화) 자정까지**입니다.
- 회장 후보 추천은 회장선출 규정 제6조에 의해 평의원이 할 수 있으며, 추천은 선거권이 없는 평의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의 후보 추천도 가능합니다.
- 2인 후보가 확정되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안내와 공약 등을 공개합니다.

#### 3. 선거권

- 선거권(또는 정회원 선거권)은 회장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거년도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2년간 정회원 자격으로 의무를 다한 회원만 가집니다. 이것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최근 3개년도 동안 회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2개년도 이상 정회원(또는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은 2인 회장후보 선출을 위한 '평의원 선거권'을 가집니다. 단, 선거 공고일(2024년 3월 27일) 기준으로 평의원이어야 합니다. (평의원 인준을 받았더라도 정관 제

#### 21조에 의하여 평의원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해야 평의원 자격을 얻습니다.)

#### 4. 선거권에 대한 이의 신청

- 평의원 선거권, 즉 '2인 회장후보 선출' 선거권에 대한 이의 신청은 2024년 5월 5일(일)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학회사무국(office@kps.or.kr)에 제출된 경우만 이의 신청을 인정합니다.
  \* 평의원의 회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는 회장후보가 1명 이하 또는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평의원 투표권 이의신청은 평의원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 ∘ 정회원 선거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4년 6월 30일(일)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학회사무국 (office@kps.or.kr)에 제출된 경우만 이의 신청을 인정합니다.
- 이의 신청은 접수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용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선거권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5. 이메일 및 휴대전화 번호 확인

• 전자투표 링크 수령을 위해 5월 5일(일)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Mypage > 프로 필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첫 번째 이메일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2. 회장선거 일정

항목	2024년도	비고
선거일정	3월 27일(수)	∘회장 선거 및 후보자 등록 공지
선거권자 공표	4월 17일(수)	∘선거권자 명단 발표
평의원 선거권 이의신청 마감	5월 5일(일)	∘ 4/17일 평의원 선거권자 명단 공지문 참조*
후보등록 마감	5월 7일(화)	○ 후보자격 : 정회원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 ○ 평의원 20인 이상 서면 추대 ※ 마감 후 회장 후보자 수가 2인이 아닐 경우 평 의원 선거를 실시
평의원 전자투표*	5월 27일 ~ 6월 5일 오후 4시	∘6월 5일 오후 4시에 전자투표 종료*
평의원 투표용지 개표*	6월 5일(수) 오후 4시~6시	∘ 평의원 전자투표결과 개표* ∘ 2인 후보 확정 및 발표*
정회원 선거권자 이의신청 마감	6월 30일	◦ 4/17일 정회원 선거권자 명단 공지문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회원 선거권 이의신청 심 의 후 결과 통보
정회원 전자투표	7월 21일 ~ 7월 30일 오후 4시	∘ 7월 30일 오후 4시에 전자투표 종료
정회원 투표용지 개표	7월 30일(화) 오후 4시~6시	·정회원 전자투표결과 개표 및 선거결과 즉시 공 고

<sup>\*</sup>표시 부분은 후보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 수가 2인이 아닌 경우 시행함

<sup>※</sup> 우편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 첨부3. 회장선출 규정 전문

#### 제1조

(선거시기) 차기회장 선거는 투표 및 개표를 포함하여 현 회장 임기 2차년도(이하 선거년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제2조

(선거방법) 회장선거는 정관 제12조 ①항에 따라 실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① 선거권은 선거년도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으로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 ②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이사회는 선거년도 3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선거년도 12월 31일에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 제5조

(위원회 업무)

- ①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피선거권 및 선거권 심사, 후보의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위원회는 선거년도 4월 30일까지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일정과 선거권자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② 항에 의해 공표된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투표마감 30일 전까지 받도록 한다.

#### 제6조

(후보등록)

- ① 회장 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해 추천된다.
- ② 추천된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③ 후보로 추천된 회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을 대상으로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 2인을 후보로 선정한다. 다만, 투표 결과 1위 득표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위 득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2인을 후보자로 선정하며,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위 득표자 중 연장자를 후보자로 선정한다.

④ 후보로 추천된 회원이 1인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평의원으로부터 각각 잔여 1인 또는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다수득표자순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다만 후보로 선정된 자가후보 수락을 사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다수득표자를 후보로 선정한다.

#### 제7조

(선거운동)

- ① 위원회는 후보 2인이 확정되면 각 후보에 대한 이력 및 소견을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 ②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 ③ ②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8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 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후보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후 즉시 공고한다.

#### 제9조

(차기회장) 선출된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실무이사회의 회의록을 보고받는다.

####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6.10.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련 세칙이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2017.2.22.)(2021.2.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